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16 선고 2022가단500210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 고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마루 담당변호사 남명진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성호

변 론 종 결 2022. 4. 18.

판 결 선 고 2022. 5.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1. 피고와 D 사이에 부산 남구 E건물 F호에 관하여 2019. 3. 15. 체결한 재산분할협의계약은 5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기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로써,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그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한하여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어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33258 판결,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49816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정함에 있어 위와 같이 혼인중 형성한 재산의 청산적 요소와 이혼 후의 부양적 요소 외에,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00. 10. 10. 선고 2000다27084 판결,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 성립 여부를 심리하는 법원으로서 부부 사이의 ‘상당한 재산분할액’을 정함에 있어 부양료 외에 위자료가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아울러 참작할 수 있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73105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위

○ 피고의 남편 D은 2014. 3. 25. 청구취지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약칭)를 취득하였다. 취득가액은 2억 4,000만 원이다[갑 6].

○ D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① 2017. 4. 14. G(주) 앞으로 채권최고액 2억 2,885만 원의

근저당권을, ② 2017. 5. 12. H조합(이하 ‘H조합’ 약칭) 앞으로 채권최고액 2,600만 원(실채무액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였다[갑 6, 2022. 4. 27.자 금융정보회신].

○ D은 2018. 12. 3. I(주)로부터 이율 연 19.9%, 상환기간 12개월,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로 약정하여 2,300만 원을 대출받았다[갑 1]. 위 대출금을 12개월로 균등분할하면 월 상환원금이 약 191만 원 정도에 이른다.

○ D은 2019. 3. 1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2019. 3. 15.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갑 6]. 당시 위 각 근저당권은 말소되지 않았다.

○ D은 위 대출금에 대하여 원금 13,954,020원을 남겨 놓은 상태(대출원금 변제액 9,045,980원)에서 그 원리금 상환을 연체함으로써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갑 2, 5]. 위 잔존 원금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2019. 5.경까지는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납부했던 것으로 추단된다.

○ 2020. 8. 21. H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은 같은 날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갑 6].

○ 그 무렵 D의 소재는 파악되지 않았고, 이에 대출금 채권을 양수받은 원고가 D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법원 2020가소2246713)1)은 2020. 11. 24.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다[갑 2]. 위 사정에 비추어 보면 H조합 채무를 D이 변제하였을 리 만무하다.

○ 2019. 3. 기준 이 사건 아파트의 시세는 2억 7,750만 원 정도이고[갑 8], 위 금액을 하회한다는 자료 없다.

○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혼하면서 D으로부터 분할받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실질 가치는, ① 적게는 2,865만 원(= 2억 7,750만 원 - 2억 2,885만 원 - 2,000만 원), ② 많게는 6,700만 원2) 정도임을 알 수 있다.

3. 이 법원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D과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취득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먼저 ①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적 가치’ 측면에서 피고가 취득한 가액을 따져보면 실질가치의 절반인 1,432만 원 내지 3,350만 원 정도3) 이고, 여기에다가 ② ‘부양적 성격’과 ‘위자료’ 측면을 더하여 살펴보면, D과 피고 사이의 위와 같은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실질 분할금액이 2019년 기준 1인 가구 최저생계비(월 1,024,205원)의 2-3년치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서영호

- 1) 원고는 2020. 6. 10. D을 상대로 이 법원 2020차전287327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가 소재불명으로 계속 송달불능되자, 소송절차로 이행하여 위와 같이 공시송달로 판결을 선고받았다.
- 2) G의 실채권액을 1억 9,000만 원 정도로 가정하였을 경우이다.
- 3) 부부로서 공동재산 형성에 대한 피고의 기여도는 통상 1/2 정도이다.